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901호 2012. 9. 11(화)

# 포항시보

## ◀ 규 칙 ▶

-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(제571호) ..... 2
-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제572호) ..... 4

## ◀ 입법예고 ▶

-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제2012-1395호) ..... 14

## ◀ 고 시 ▶

-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(제2012-88호) ..... 21
-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(제2012-90호) ..... 22

## ◀ 공 고 ▶

- 제192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(제21호) ..... 31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규 칙**

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2년 9월 11일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포항시 규칙 제571호

**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 
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**

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1. 폐지이유**
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지 않아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- 「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」 폐지

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2년 9월 11일

포항시장 박승호

포항시 규칙 제572호

**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**

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2조제1항제2호**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.

**제3조제2항**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**제6조제2항** 중 “민간전문가” 를 “민간전문가(위원의 과반수 이상)” 로 한다.

**제12조제5항** 중 “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5조제3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**제17조**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) ①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 
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  
산에 편성(단, 비현금성 협력사업 제외)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예산에 반영 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 
등에 따라 처리 한다.

별표와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【별표】**

**【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】**

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	배점	비고
계	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	30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 - 배점(10점)	10	
	· 국외평가기관	6	
	· 국내평가기관	4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 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 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20	
	· BIS 자기자본비율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평가	7	
	· 고정이하 여신비율	7	
	· 자기자본 이익율	6	
		18	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5	
	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4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
		24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가.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7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9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5	
	라. 지역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	3	
		18	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5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5	
	라. OCR센터 운영계획	3	
		10	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	가. 지역사회 기여도	5	
	나.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	5	

[별지 서식]

【 금융 기관 심 의 표 】

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( )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 
위 원 (인)

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	기준	평가	비고
계		100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	30	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 - 배점(10점)	10		
	· 국외평가기관	6		
	· 국내평가기관	4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 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 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감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20		
	· BIS 자기자본비율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	7		
	· 고정이하 여신비율 · 자기자본 이익율	7 6		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	18	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	
	나. 공급예금 적용금리	5		
	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4	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	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		24		
	가.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7	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9	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5		
	라.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	3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18	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5	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5		
	라. OCR센터 운영계획	3		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		10		
	가. 지역사회 기여도	5		
	나.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	5		

**□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**

- 가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나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.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,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)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.5점에서 최소 0.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.

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<b>제2조(금고지정) ① (생 략)</b>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 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</p> <p>3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(단, 재 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 기간을 초과 하지 못함)</p> <p>4.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<b>제2조(금고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    &lt;삭 제&gt;</p> <p>    &lt;삭 제&gt;</p> <p>    &lt;삭 제&gt;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조(금고지정기준) ① (생 략)</b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	<p><b>제3조(금고지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6조(구성) ① (생 략)</b>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위원은 시의회 의원,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<b>제6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민간전문가(위원의 과반수 이상)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
<p><b>제12조(금고지정 절차) ① ~ ④</b> (생 략) ⑤ 시장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 야 한다.</p> <p>〈신 설〉</p>	<p><b>제12조(금고지정 절차) ① ~ ④</b>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제5조제3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b>제17조(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)</b> ①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 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(단,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)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. ②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 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한다.</p>

현행			개정					
<b>[별표]</b> <b>【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】</b>			<b>[별표]</b> <b>【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】</b>					
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배점	비고	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배점	비고			
계	100		계	100		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30		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30			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<신설>	10		가. (현행과 같음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-배점(10점)	10			
	· 국외평가기관	6		· (현행과 같음)	6			
	· 국내평가기관	4		· (현행과 같음)	4	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<신설>	20		나. (현행과 같음) 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협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른다. 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20			
	· BIS 자기자본비율 <신설>			7		· (현행과 같음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	7	
	· 무수익 여신비율			7		· 고정이하 여신비율	7	
	· 자기자본 이익율			6		· (현행과 같음)	6	
							18	
	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18			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18	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	6	가. (현행과 같음)	6				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	5	나. (현행과 같음)	5				
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	4	다. (현행과 같음)	4				
	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라. (현행과 같음)	3			
	24			24			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7	가.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<신설>	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7	가.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		
	9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	9	나. (현행과 같음)			
	5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		5	다. (현행과 같음)			
	3	라. 지역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		3	라. (현행과 같음)			
	18			18				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5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5	가. (현행과 같음)			
	5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	5	나. (현행과 같음)			
	5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	5	다. (현행과 같음)			
	3	라. OCR센터 운영계획		3	라. (현행과 같음)			
	10			10				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 능력	5	가.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	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 능력	5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			
	5	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		5	나. 시와 협력사업 추진			

현 행				개 정				
<p><b>[별지 서식]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금융기관 심의표】</b></p> <p>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( )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(인)</p>				<p><b>[별지 서식]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금융기관 심의표】</b></p> <p>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( )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(인)</p>				
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	배점	비고	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	배점	비고	
계		100		계		100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<신 설>	30		가. (현행과 같음) ※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평가 - 배점(10점)	10			
	· 국외평가기관	6		· (현행과 같음)	6			
	· 국내평가기관	4		· (현행과 같음)	4	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<신 설>	20		나. (현행과 같음) 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 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	20			
	· BIS 자기자본비율 <신 설>	7		· (현행과 같음) ※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	7			
	· 무수의 여신비율	7		· 고정이하 여신비율	7			
	· 자기자본 이익율	6		· (현행과 같음)	6			
			18				18	
	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	가. (현행과 같음)	6		
	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5		나. (현행과 같음)	5		
	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4		다. (현행과 같음)	4		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	라. (현행과 같음)	3			
		24				24	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가.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<신 설>	7		가. 관내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7		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9		나. (현행과 같음)	9		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	5		다. (현행과 같음)	5			
	라.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	3		라. (현행과 같음)	3			
		18				18		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	가. (현행과 같음)	5		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5		나. (현행과 같음)	5		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	5		다. (현행과 같음)	5			
	라. OCR센터 운영계획	3		라. (현행과 같음)	3			
		18				18		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 능력	가.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	5	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	5			
	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	5		나. 시와 협력사업 추진	5			

현 행	개 정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<u>[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]</u></b></p> <p><u>가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나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.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, 세부 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)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.5점에서 최소 0.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.</u></p>

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2조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」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(2012.7.11.)로 개정됨에 따라 시금고의 지정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,
- 지역조합이 금고(기금, 특별회계)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,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일부 불합리한 수의 방식의 금고지정 기준 삭제(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)
- 나. 자치단체 출연 등 협력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명확화 (안 제17조)
  -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.
    -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에 대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
- 다. 지역조합에(제2금융권) 대한 평가기준 마련(별표)
- 라.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(별표)
  - “관내지점의 수”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
- 마.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명확화

**입법예고**

포항시 공고 제2012-1395호

「포항시 수입증지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9월 7일

포항시장 박승호

**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·구축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요금계기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변조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함

**2. 주요내용**

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 증지로 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근거 마련(안 제5조의3)

**3. 관련법령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-602(2012.2.28)호 및 경상북도 세정과

-3089(2012.3.6)호로 지방세 제증명 “전자수입증지” 적용 통보

4. 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: 2012년 9월7일 ~ 2012년 9월28일(21일간)

6. 의견제출

「포항시 수입증지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: 재정관리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제출처 및 문의처

- 보내실 곳 : 포항시청 재정관리과(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)
- 전화 054)270-2503, 팩스 054)270-2490, 이메일(pya0811@korea.kr)

라. 제출서식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7. 기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ipohang.org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4조제2항** 중 “회계년도” 를 “회계연도” 로 한다.

**제5조제2항제3호** 중 “년월일” 을 “연월일” 로 한다.

**제5조의3**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5조의3**(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)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(이하 “지방세시스템” 이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

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증명명에는 제6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

**제21조** 제목 중 “주민시스템사용 수입금” 을 “주민시스템·지방세시스템 사용 수입금” 으로 한다.

**제21조제1항** 중 “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5조 및 제5조의2, 제5조의3에 따라” 로 한다.

**제21조제3항** 중 “주민시스템 사용” 을 “주민시스템·지방세시스템 사용” 으로 하고 “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” 를 “별지 제8호,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” 로 한다.

**제21조제4항** 중 “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” 를 “주민시스템·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에” 로 한다.

**제26조제2항** 중 “전항의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전항의” 를 “제2항의” 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전항의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전항의” 를 “제2항의” 로 한다.

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<b>제4조(증지의 발행) ① (생 략)</b>            ②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회계년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③ (생 략)</p>	<p><b>제4조(증지의 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② -----            ----- 회계연도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조(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) ① (생 략)</b>            ② (생 략)            1. ~ 2. (생 략)            3. 발행년월일            4. (생 략)            ③ (생 략)</p>	<p><b>제5조(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. ~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3. ---연월일           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5조의3(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사용)</b>           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(이하 “지방세 시스템” 이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           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 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 할 수 있다</p>
<p><b>제21조(계기 및 무인발급가주민시스템 용 수입금의 정산) ① 제5조 및 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다음 날까지, 그이외의 곳에서는 5일 에 납입하여야한다. 단 신용카드·교통카드 로 증지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정산일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</b></p>	<p><b>제21조(계기 및 무인발급가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 제5조 및 제5조의2, 제5조의3에 따라</b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

현 행	개 정
<p>② (생 략)</p> <p>③ 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<u>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9호 식에 의하여</u>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계기 및 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의 <u>고장 및 기타</u>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지는 “결손”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본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주민시스템·지방세시스템 사용----- <u>별지 제8호, 별지 제9호,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</u> -----</p> <p>④-----주민시스템· 지방세시스템의 <u>고장 및 그</u> <u>밖에</u> -----</p>
<p><b>제26조(증지의 환매)</b>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<u>전항의</u>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<u>별지 제4호</u>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.</p> <p>③ 시금고에서는 <u>전항의</u>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6조(증지의 환매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</p> <p>③ ----- <u>제2항의</u> -----</p>
<p><b>제27조(증지의 교환)</b>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<u>전항의</u> 교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<u>별지 제4호</u> 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.</p> <p>③ 시금고에서는 <u>전항의</u>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 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7조(증지의 교환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</p> <p>③ ----- <u>제2항의</u> -----</p>



# 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2-88호

##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외 3개소 지방하천(서정리천, 청하천, 기계천, 화대천)내에 포항시 청하·기계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오수관로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(공작물의 신축)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2012년 9월 5일

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

포항시장 박승호 (인)

### □ 하천점용(공작물의 신축)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

하천명	점용위치		점용목적	점용면적(m <sup>2</sup> )		점용기간		점용자	비고
	읍면동	지번		일시	영구	일시	영구		
서정리천 (지방하천)	청하면 유계리	785-47번지 외 12필지	관로 매설	1,385	82	2012. 9. 5 ~ 2015. 6. 4	허가 일로 부터 영구	포항엔텍(주)	
청하천 (지방하천)	청하면 덕천리	285번지 외 2필지	관로 매설	151	7				
기계천 (지방하천)	기계면 학야리	1031-1번지 외 3필지	관로 매설	443	43				
화대천 (지방하천)	기계면 화대리	650-29번지 외 2필지	관로 매설	132	5				

포항시 고시 제2012-90호

###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법률 제3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9월 10일

포항시장 박승호

###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#### 1. 산업단지 개요

##### 가. 산업단지개요

- 명 칭 :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
- 위 치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
- 면 적 : 194,682.7㎡
- 사업시행자 : 포항시장 (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)
- 시행방법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1항1호에 의한 공영개발
- 시행기간 : 2010. 11. 19 ~ 2012. 08. 30
- 관리기관 : 포항시

#### 나. 조성목적

-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내 포항시와 (주)동국S&C간에 체결된 투자양해각서 및 세부투자협약에 의하여 (주)동국S&C에서 요구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
- 영일만항의 항만기능을 증대하고, 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실업난해소 및 지역경제기반을 강화

#### 다. 추진경위

- '04. 02. : 포항신항만 배후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
- '07. 11. 27 : 문화재지표조사 완료
- '08. 09. 22 :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용역 완료
- '08. 09. 30 : 사전환경, 재해 및 공유수면매립 반영요청용역 완료
- '08. 12. 24 :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
- '09. 03. 11 : 실시설계용역 착수
- '09. 09. 04 : 동국S&C 와 투자실무협약체결
- '09. 09. 14 : 칠포유원지해제 (390,254㎡)
- '09. 11. 25 : 환경,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용역 완료
- '09. 12. 02 :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  
공람( '09.12.02~12.30 - 20일간)
- '09. 12. 10 : 합동설명회 개최
- '10. 10. 14 :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요청 (경상북도)
- '10. 10. 24 :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(서면)  
(2010.10.27~11.02 - 7일간)
- '10. 11. 19 :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
(포항시 고시 제2010-100호)
- '11. 01. 06 :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
- '11. 12. 30 :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(포항시 고시 제2011-123호)
- '12. 06. 26 :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고시  
(포항시 고시 제2012-56호) ※ 시행기간 변경
- '12. 08. 24 :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
(포항시 고시 제2012-77호) ※ 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른 변경
- '12. 08. 30 :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 
(포항시 고시 제2012-1370호)

라. 분양현황

구 분	총면적	분양현황(㎡)			조성현황(㎡)			조성 기간	조성 기관
		분양	미분양	소계	조성	미조성	소계		
계	194,682.7	175,487.6	-	175,487.6	194,682.7	-	194,682.7	10.11. ~ 12.08.	포 항 시
산업시설구역	175,487.6	175,487.6	-	175,487.6	175,487.6	-	175,487.6		
지원시설구역	-	-	-	-	-	-	-		
공공시설구역	2,810.2	-	-	-	2,810.2	-	2,810.2		
녹지시설구역	16,384.9	-	-	-	16,384.9	-	16,384.9		

마. 입주현황(계획)

입주 업체수(개)			면 적(㎡)		
제조업체	지원시설	계	제조업체	지원시설	계
1	-	1	175,487.6	-	175,487.6

주) 입주업체는 변경 될 수 있음

바. 입주여건(기반시설)

시설명	현 황	시행기관
단지내 도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2개노선(대로2류, 소로3류)</li> <li>•연장:83m (대로 : 각각부, 소로 : 83m)</li> <li>•면적:1,076.2㎡ (대로 810.4㎡, 소로 265.8㎡)</li> </ul>	포항시
녹지	•완충녹지 2개소 : 16,384.9㎡	포항시
용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용수수요량 : 1,210㎡/일</li> <li>- 공업용수 : 1,079㎡/일 - 생활용수 : 131㎡/일</li> <li>※ 양덕정수장을 통해 빌래배수지에서 인접한 2단지로 공급되는 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</li> </ul>	포항시

시설명	현황	시행기관
전 력	• 전력소요량 : 43,908 kw/년 - 산업시설 : 43,908 kw/년	한국전력공사
통 신	• 통신수요량 : 89회선 - 산업시설 : 87회선 - 공중전화 : 2회선	포항시 전화국
오·폐수 처리	• 오·폐수 발생량 : 394.57m <sup>3</sup> /일 - 공장폐수 : 290.84m <sup>3</sup> /일 - 생활오수 : 103.73m <sup>3</sup> /일 ※ 오·폐수는 흥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	포항시
폐기물 처리	• 폐기물 발생량 총 7.275톤/일 산정 - 사업장폐기물 : 6.384톤/일(지정 0.152톤/일 포함) - 생활계폐기물 : 0.891톤/일 ※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그 외 폐기물은 호동 매립장에서 매립 및 소각하여 처리	사업시행자 (폐기물처리사업자)
주차장	• 주차장 1개소 1,734m <sup>2</sup>	포항시
도시가스	• 포항도시가스에서 LNG도시가스를 공급토록 계획	포항도시가스

**2. 관리기본방향**

-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
- 입주업무의 적극 지원에 의한 조업활동의 극대화 유도로 산업단지 생산성 제고
- 기존산업단지 입주업체간 전문화, 계열화 배치로 단지관리의 효율화
-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
- 기술축적과 상호개발을 통한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
**3. 관리기본계획**

**가.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**

(1) 용도별 구획면적

(단위 : m<sup>2</sup>, %)

총 면적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시설구역	비 고
194,682.7 (100.0)	175,487.6 (90.1)	-	2,810.2 (1.5)	16,384.9 (8.4)	

(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(가) 산업시설구역
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산집법’)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.

(나) 공공시설구역

-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

(다) 녹지시설구역

- 산업단지의 미관,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 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

(3) 용도별 구획 평면도 : 별첨 1

**나. 입주관리계획**

(1) 입주대상업종

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 운송장비제조업(C31)

(2) 입주자격

- ‘산집법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(공장)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을 영 위하고자 하는 자

(3) 입주우선순위

- 인근 산업단지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및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
- 수출유망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
- 도내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
- 타 시·도에서 본 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
- 기타 본 산업단지로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업체
- 환경친화적인 업체

### 다. 업종별 배치계획

#### (1) 배치계획

구 분		산업시설구역			비고
		업체수	면적(m <sup>2</sup> )	구성비(%)	
합 계		1	175,487.6	100.0	
공장 시설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	1	175,487.6	100.0	
	기타 운송장비제조업(C31)				

#### (2) 배치기준

-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
- 환경적(소음 및 진동, 수질, 대기 및 악취) 측면을 고려한 배치
-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 (관리권자로부터 승인취득)

#### (3) 업종별 배치계획도 : 별첨 2

### 라. 사후관리계획

- 입주계약,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
-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
-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
-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1,650m<sup>2</sup> 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는 고정식 구조물(담장 등)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시 가능
-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취득이 불가
-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면적이 300m<sup>2</sup>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
- 공장건축면적은 '산집법'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

### 마.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‘산집법’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, 분양공고문, 분양유의사항,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함.

#### 4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: 붙임 도면계재 생략

-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열람이 가능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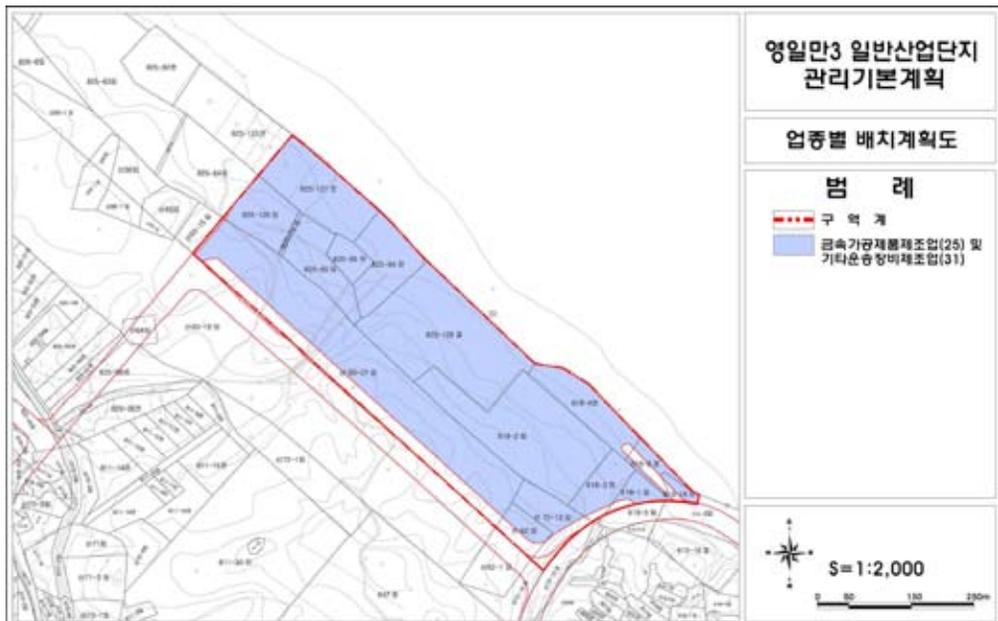
#### 5. 관련도서 열람방법

- 관계도서는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(☎054-270-384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(관계도서 계재생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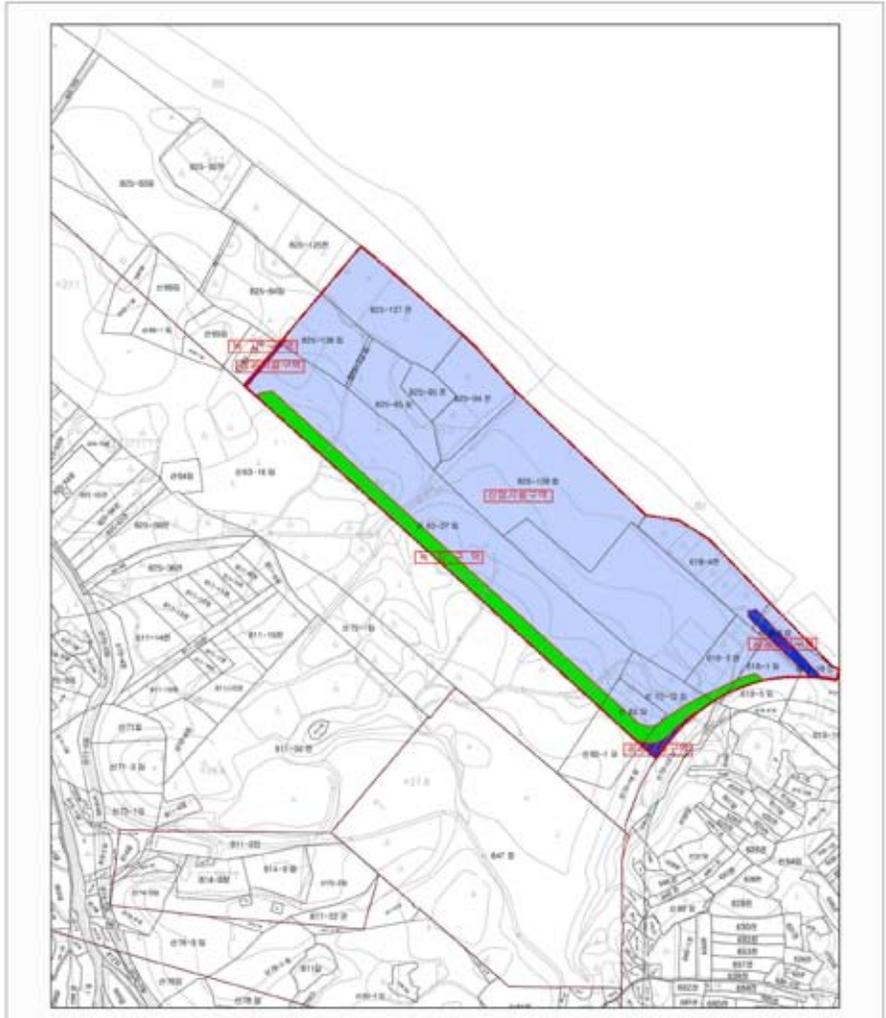
별첨 1)



별첨 2)



###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고시도



범례

축척 1:2,500

색안도
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도로
	도로		철도
	천		호수
	지형도면		경계선
	일반산업단지		

**공 고**

포항시의회 공고 제21호

**제192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**

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2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**일시 : 2012년 9월 18일(화요일) 오전 11시 30분**

**장소 : 포항시의회 본회의장**

2012년 9월 10일

**포항시의회의장 이 칠 구**

